

#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1999· 4· 8 규칙 제160호  
개정 2001· 12· 6 규칙 제234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 
개정 2003· 2· 17 규칙 제256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 
개정 2008· 7· 25 규칙 제37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23· 3· 6 규칙 제743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24· 7· 1 규칙 제772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가입범위)**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.

**제3조(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)** ①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관의 장이 하는 공고는 이천시보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하며,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시 자치행정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· 3· 6, 2024· 7· 1>

**제4조(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)** ①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,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「공무원직장협

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등에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을 7일로 하되, 보완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·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가입 및 탈퇴의 절차)**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**제6조(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)**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,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.

**제7조(협의회 설립사실 보고)**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·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01·12·6 규칙 제23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2003·2·17 규칙 제256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2008·7·25 규칙 제37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별표 중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명란에 “상수도사업소”를 삭제한다.

부칙 <2023·3·6 규칙 제743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24·7·1 규칙 제772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및 ⑨ 생략

[별표] <개정 2008·7·25>

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 
(제2조관련)

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명	가입할 수 있는 협의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원관리사업소</li> <li>○ 체육시설관리사무소</li> <li>○ 장호원읍, 부발읍, 신둔면 백사면, 호법면, 마장면 대월면, 모가면, 설성면, 율면 창전동, 증포동, 중리동, 관고동</li> </ul>	<p>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(시분청)</p>

[별지 제1호서식]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 
(제4조제1항관련)

명	칭	
대 표 자	근 무 부 서	
	직 급	
	성 명	
회	원	○ ○ ○ 외 명
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	일 시	
	장 소	
	참석회원 수	○ ○ ○ 외 명
	결 의 사 항	
<p>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○ ○ ○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
<p>〈첨부서류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</li> <li>2. 협의위원명부·회원명부(소속, 기관 및 근무부서, 직급, 성별, 성명, 전화번호 기재) 각 1부</li> <li>3.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</li> </ol>		

[별지 제2호서식]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
(제4조제2항관련)

명 칭		
대 표 자	근 무 부 서	
	직 급	
	성 명	

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(기 관 명)

인

[별지 제3호서식]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 사항 보완요구서  
(제4조제2항관련)

명 칭		
대 표 자	근 무 부 서	
	직 급	
	성 명	
보완을 요하는 사항		
보 완 이 유		
보 완 기 한		

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통보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(협의회 설립기관의 장)

인

[별지 제4호서식]

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(탈퇴)원서  
(제5조관련)

소 속			
직 급			
성 명		성 별	
<p>위 본인의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(서) 가입(탈퇴)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 ○ ○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</p>			

[별지 제5호서식]

제○회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를록  
(제6조관련)

1. 일 시 :

2. 장 소 :

3. 참 석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명(협의회    명, 설립기관의 장 등    명)

○ 대표자 및 협의위원

○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

4. 협의내용

5. 합의사항

“별지참조”

6. 기타 토의사항

※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“대표자” 및 “협의위원”과 성명을, 기관장(대리시수임자) 및 관련공무원은 직·성명을 기재함.

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6호서식]

제○회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 
(제6조관련)

제○회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
- 
- 

년 월 일

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○○○(서명 또는 날인)

(협의회 설립기관의 장) ○○○(서명 또는 날인)

[별지 제7호서식]

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 
(제7조관련)

(설립기관명)

[단위(인원) : 명]

연번	설립								미설립													
	직협명 (소속기관)	대표자			협의 위원수	설립 일	회원			사유	회원											
		근무 부서	직급	성명			계 (A)	가입 금지 (B)	가입대상(C)		계 (A)	가입 금지 (B)	가입 대상 (C)									
									가입					미가입								

※ 공무원수 A=B+C